

[별지 1 서식]

위탁진료 표준계약서(1)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를 위하여 ○○보훈병원장을 “보훈병원장”이라 하고, ○○병원 (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장을 “위탁병원장”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위탁진료대상자) “보훈병원장”이 “위탁병원장”에게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진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등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7항 각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조(의무)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은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위탁 병원장”은 위탁진료대상자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진료하여야 한다.

제3조(진료대상 확인) ① “위탁병원장”은 제1조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진료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분증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진료자격을 조회하기 위하여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자격조회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진료하여야 한다.

- ② “위탁병원장”은 위탁진료대상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대상 여부를 즉시 “위탁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은 위탁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고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 및 국가보훈처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이하 “의료지원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4조의 2(약제비용의 지원 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제8항에 따라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 판매업자, 수입자가 이행할 조건을 고려하여 상한 금액이 정해진 약제(이하 위험분담 계약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진료병원 현황 및 자료의 제공) ① “위탁병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는 관계서류를 최초 계약시 및 시설·장비, 진료과목, 전문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하는 “보훈(지)청장”과 “보훈병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훈병원장”이 “위탁병원장”에게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자료제공 등을 요구한 때에는 “위탁병원장”은 지체 없이 최대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병원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설치) “위탁병원장”은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적기에 건강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재원환자 현황 제출) “위탁병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위탁진료대상자의 재원환자 현황을 의료지원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훈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기간) 입원진료는 30일¹⁾ 이내로 한다.

제8조(전원) “위탁병원장”은 “보훈병원장”이 의료지원규정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보훈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는 환자는 전원시켜야 한다.

1) 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 “90일”로 기재

제2장 전상군경등 위탁진료

제9조(비용의 부담의 특례) ①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처장이 고시하여 정한 진료비 외의 비용

2. 장기이식(콜수이식 포함)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공여자의 제반 비용

② “위탁병원장”이 업무처리기준을 초과하여 처방한 원외처방 약제비의 경우 “보훈병원장”은 초과한 약제비용을 “위탁병원장”이 청구한 진료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구급차 사용) 보훈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된 응급 또는 중증환자 중 “위탁병원장”은 구급차에 의한 후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구급차를 배차할 수 있으며, 구급차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사소견서 및 구급차 이용 관련 서류(“이송처치료영수증”과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첨부하여 “보훈병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장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등 위탁진료

제11조(범위) ① 75세이상 무공수훈자등이 국가로부터 감면받는 위탁진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감면진료대상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90으로 하되, 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약국 약제비)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진료대상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병원장”은 질병이 의학적으로 완치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료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진료 비대상 질병) “위탁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질환을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병의 진료비는 “보훈병원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보험자에게 급여제한 조회 결과 급여제한으로 결정된 질환

2. 보험자에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신고서가 제출된 질환

제13조(비용의 부담)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장”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행한 진료비

및 장기이식(골수이식 포함)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공여자의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비용의 청구) ① “위탁병원장”은 “보훈병원장”에게 75세이상 무공수훈자등의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서 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매월 1회 단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탁병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감면진료비 이외 비용은 75세이상 무공수훈자등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의 지급)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장”이 청구한 감면진료비를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구급차 사용) 제8조에 따라 전원이 결정된 환자의 구급차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이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자료제공 요구와 현지 조사를 할 경우에는 “위탁병원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은 적정성 평가결과를 “위탁병원장”에게 통보하여 개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위탁병원장”은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수정 · 해석) ① 계약 내용 중 법령 개정 등으로 “보훈병원장”的 진료비용 부담 범위 등이 법령과 다른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간에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보훈(지)청장의 조정에 따라 정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위탁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2. 위탁병원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3. 위탁병원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진료가 곤란한 경우
4. 위탁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탁병원이 「의료법」 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의료적정성 평가 2회 연속 종별 4등급 이하(4등급, 5등급, 등급제외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7. 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 변경 되거나)²⁾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또는 보훈병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8. 위탁병원장이 보훈병원장과 계약 체결이후 60일 이내에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단, 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병원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

② “보훈병원장” 또는 “위탁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병원의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표자 변경 등으로 폐업을 신고하였으나, 의료장소, 의료시설물,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진료과목 등이 그대로 새 대표자에게 양도되어 진료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인정보 보호) “위탁병원장”은 자격조회시스템에 의한 위탁진료대상자 명단의 취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개인정보

2) () 부분은 위탁병원이 병·의원인 경우에 계약서 내용에 포함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위탁병원장”, 위탁병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위탁병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귀책사유로 “보훈병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병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훈병원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보훈병원장”은 이를 “위탁병원장”에게 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계약은 20 . . .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장을 입회자로 하고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소

○○보훈병원장 (인)

주소

○○병원장(인)

“입회자” 주소

○○보훈(지)청장(인)